시공평가 가이드

1.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 (연평균)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1건 이상 (연평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2.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2.1 품질관리의 적정성

세분류	세부기준 및 방법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로 평가
	-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건수를 대상으로 함(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 자체장을 말함
	- 품질관리의 부적합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미흡', 벌점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
	※ 벌칙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2.2 시공평가 가이드(평가방법 및 확인사항)

구분	세부평가 방법	적정여부	비고
품질관리 적정성	제출된 문서가 허위 보고된 사항은 없는가? (발주청 문서 대조)		
	연평균 1건 이상 문서에 의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외부점검기관 또는 발주청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지적을 받은적이 있는가?		
	품질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품질관련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일부기관 공사단계 점검 자료 등 추가 활용

구분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시정명령)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벌칙)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험실 장비나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가. 본 가이드는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평가기관별 정성적 평목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고자 LH공사 및 시설안전공단의 평가 가이드를 참고자료로 작성하였으므로 발주청별 세부 평 가 배점 및 방법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가이드는 시공평가의 이해를 돕고, 착공 또는 시공단계부터 시공평가를 준비함으로써 기술자 및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 및 기타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제재 등 상벌규정, 종합심사 낙찰제, 효율적 업무수행 및 평가 준비 등